제 1 장 피의자 · 피고인 신원공개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4-24호
언 론 사	광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2월 6일자 6면
기사제목	행인 치고 뺑소니 잡고 보니 경찰관

1. 보도내용

「광주남부경찰은 5일 술자리에 참석한 뒤 귀가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행인의 손목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 김모(42)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 외에 직장명(○○ 경찰서 ○○지구대)과 직책(경위)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2

의결번호	제2014-60호
언 론 사	뉴스1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3월 7일자 전국면
기사제목	'근무지 이탈' 공익근무요원, 업소위장취업해 도둑질

1. 보도내용

「인천○○경찰서는 근무지를 무단이탈 후 배달 업소에 위장취업 해 현금,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이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중략)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역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인천 지역 배달업소에 위장취업 한 후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던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 외에 근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3

의결번호	제2014-208호
언 론 사	인터넷 경향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9월 2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전지훈련 중 폭행” ○○부 고교생, 2년 전 가해 선배 · 감독 등 고소

1. 보도내용

「전남 ○○의 모 고등학교 학생이 2년 전 ○○부 신입생 시절 야구부 선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가해 학생과 당시 감독이었던 현 프로○○ 구단 코치 등을 뒤늦게 고소했다. ○○은 군 단위 지역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가 있는 곳이다. (중략)
특히 당시 ○○부 감독이었던 이모씨는 현재 프로야구 구단 ○○○○○ 1군 코치로 활약하고 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단순 고소사건 피고소인의 성과 직업, 당시 전국 유일한 군단위 고등학교 야구부의 감독이었던 점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언론이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고소 · 고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2 장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사 례 4

의결번호	제2014-210호
언 론 사	트루스토리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9월 30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의붓딸 성폭행 '노조 위원장 출신' 서울시 공무원 구속기소

1. 보도내용

「(전략) 검찰에 따르면 ○○시청 ○○○○과 소속 ○○관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국으로 발령을 받은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의붓딸 김모(16)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최씨는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관련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도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성폭력 가해자인 계부의 성과 나이, 직업 등을 공개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부이므로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피해자의 신원 역시 특정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신원은 물론이고,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역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3 장 사생활 침해

사 례 5

의결번호	제2014-59호
언 론 사	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3월 27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2주만에 복직한 밀양 성폭행 옹호 女警, 최근 승진시험 합격

1. 보도내용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 남학생들을 옹호했던 사실이 알려져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2주 만에 복직해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최근 승진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경남 ○○경찰서는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2012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모(29・여) 순경이 현재 이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략)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 ○○경찰서 자유게시판엔 ○ 순경의 진급 예정 사실이 알려진 후 올라온 항의 게시물 100여개가 올라왔다. 경찰서 홈페이지엔 ○ 순경의 승진 시험 합격 소식이 다른 합격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었지만,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경찰 임용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되었던 여경의 성과 나이를 밝히면서 근무처, 근무부서 및 최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실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사생활보호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적 기본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인격권 이므로, 언론이 정당한 공적관심 사항이 아님에도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6

의결번호	제2014-172호
언 론 사	미디어제주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8월 7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서귀포시내 모 호텔 화재…120여명 투숙객 대피 소동

1. 보도내용

「서귀포시내 모 호텔 화재 … 120여명 투숙객 대피 소동」 제하의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서귀포시내 모 호텔의 화재로 인해 대피 중인 호텔 투숙객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여 개인의 초상 및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빠른뉴스 깊이 있는 보도
미디어제주

사회 | 서귀포시내 모 호텔 화재 … 120여명 투숙객 대피 소동

데스크승인 2014.08.07 08:50:01

홍석준 기자 | hngcoke@naver.com

7일 새벽 서귀포시내 모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소방서

7일 새벽 5시경 서귀포시내 모 호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투숙객 1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층 연회장 옆 물품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복도와 통로 26㎡가 소실됐고 집기류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당시 호텔에 투숙중이던 128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내 모 호텔 화재 피해 현장 모습. /사진=서귀포소방서

서귀포시내 모 호텔 화재 피해 현장 모습. /사진=서귀포소방서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 례 7

의결번호	제2014-235호
언 론 사	대구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10월 27일자 종합01면
기사제목	대구 자전거 도로 718km “있으나마나”

1. 보도내용

「대구 자전거 도로 718km “있으나마나”」 제하의 사진

「26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인도 안쪽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는 보행자가, 인도에는 자전거가 안전 의식 없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자칫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인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탑승자와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大邱日報

대구 자전거 도로 718㎞ "있으나마나"

자전거, 안전이 우선입니다

⟨1⟩ 사고 발생률 전국 최고

대구의 지형은 평탄하다. 다른 도시에 비해 자전거 타기에 아주 적합하다. 이에 따라 최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구의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3%.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러면 대구는 자전거 타기에 안전한 도시일까. 결론은 "아닙니다"이다. 되레 다른 도시에 비해 위험한 도시로 꼽힌다.

대구시는 2006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매년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되레 해마다 늘고 있다.

왜 그럴까. 지역의 자전거도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자전거사고

	2011	2012	2013
발생건수	1,354	1,394	1,443
사상자수(사망)	1,405(14)	1,456(22)	1,492(20)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자전거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1천492명.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대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부산(637명)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인구 대비 자전거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은 단연 전국 최고다.

또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1천354건, 2012년 1천394건, 지난해 1천44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인구 1백만명당 587건(2013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지만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 도로는 있지만, 자전거를 우선으로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부족하다는 것.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자전거 도로는 219개 노선에 총 718㎞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83%인 184개 노선 611㎞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차도에 화단과 연석 등으로 분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28개 노선 92㎞, 차도 위에 탄력봉과 노면 도색 등으로 구분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7개 노선 15㎞뿐이다.

◆보행자 겸용도로 실효성 의문

대구시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당국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사고 위험성을 감안, 2010년부터 차도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인도 안쪽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는 보행자가, 인도에는 자전거가 안전 의식 없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자칫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진홍 기자

대구 자전거타기운동본부 김종석 본부장은 "차도로 다녀야 하는 자전거가 보행자와 함께 보도 위로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자전거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달서구와 북구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각각 119.89㎞, 121.85㎞에 달하지만, 대부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전용도로 비율은 각각 5.2%와 6.6%에 그치는 실정이다.

대구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 전용도로 구축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당장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설치예정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안전인식 변화도 시급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외에도 자전거 이용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면에 계속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제 4 장 마약 및 약물관련 보도

사 례 8

의결번호	제2014-46호
언 론 사	연합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1월 28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신종 마약' 판매 · 투약한 동성연애자 30여명 검거

1. 보도내용

「국내 유통이 금지된 신종 마약을 몰래 유통시키고 투약한 동성연애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적 흥분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신종 마약류를 판매한 백모(43)씨와 이를 구매해 투약한 김모(27)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영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국제우편으로 받아 동성연애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 · 복용한 마약은 일명 '○○'와 '○○'라고 불리며 성관계 중 성적 흥분도를 높여준다는 이유로 주로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복용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자들도 모두 동성연애자다. 투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백씨에게서 마약을 구입했으며 일부는 외국 여행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흡입형 마약인 ○○는 지난해 12월 10일, 담배처럼 피우는 마약인 ○○는 지난해 9월 6일에 각각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됐다. 이들 마약은 복용하다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를 한 병(○g)당 약 ○만원씩 주고 80병을 구매한 뒤 2병에 ○○만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종 마약을 거래하거나 만나서 함께 복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인 '○○', '○○'의 구입가격,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고, 마약범죄를 범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9

의결번호	제2014-90호
언 론 사	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3월 13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서울 한복판에 '대마 온실' 만든 간 큰 마약상 체포 …한달 전기세만 160만원

1. 보도내용

「(전략)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역 근처 노상에서 김군에게 대마 17g을 ○○만원에 판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대마 31g을 ○○○만원에 판매해 거래선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중략) 이 '대마 온실'은 ○○○조명과 ○○○, 캐나다산 퇴비 등을 갖췄다. 온실을 유지하기 위해 이씨 일당은 한 달에 전기세만 160만원을 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대마 특유의 냄새 때문에 발각되지 않도록 온실문을 3중으로 잠그고, 서로 대포폰으로만 연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대마초의 제조 원료 및 제조방법, 판매가격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마약범죄를 범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0

의결번호	제2014-152호
언 론 사	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7월 2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술에 '이것' 탔더니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술술' 털어놔 … 술에 마약 탄 강도단 검거

1. 보도내용

「(전략)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 18일 오후 8시 20분쯤 양주 남방동 한 식당 별실에서 땅을 살 것처럼 속여 유인한 부동산중개업자 박모(51)씨에게 술에 마약류인 '○○○○'을 탄 마시게 해 박씨가 정신을 잃자 신용카드를 빼내 1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은 강력한 진정·수면·예비마취 효과를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기억상실과 최면 등을 일으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다. 박씨 등은 ○○○○을 탄 술을 먹은 뒤 신용카드를 내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다.(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향 정신성의약품의 명칭과 효능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해당 약물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1

의결번호	제2014-299호
언 론 사	뉴스1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11월 20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ㅇㅇㅇㅇ 팝니다”…온라인서 마약 판매 일당 덜미

1. 보도내용

「(전략)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달 10일 스마트폰 채팅 앱에 ‘한 ○, 한 ○, 반 ○ 팝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겨 이를 알아챈 이씨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 ○○○○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필로폰 ○.○~○.○g이 든 주사를 대당 ○○만~○○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이 사용한 단어 중 ‘한 ○’은 주사기 한 ○, ‘한 ○’은 주사기 한 대 등을 의미하는 ‘은어’로 조사됐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별칭, 사용량, 구입가격 및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5 장 자살관련 보도

사 례 12

의결번호	제2014-144호
언 론 사	인터넷 서울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8월 5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난 외톨이' 언어장애 30대 남성의 쓸쓸한 죽음

1. 보도내용

'그동안 많이 외롭고 슬프고 정이 그리웠습니다.' 직업도 없이 홀로 살아온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오전 3시 45분께 부산시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 단칸방에서 양모(37)씨가 목을 매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중략) 양씨는 유서에서 '친부모 없이 어린 시절 양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11살 때 중국집 배달원으로 내몰리는 등 학대를 당했고 학교도 잘 못갔다'며 '그 결과 대인기피증과 언어장애를 갖게 돼 이성친구 하나 못 사귀고 외톨이로 살아왔다'고 적었다. 양씨는 또 '참많이 외로웠고 더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양씨는 20년 이상 부모와 연락을 끊고 별다른 직업도 없이 홀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자살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3

의결번호	제2014-173호
언 론 사	경안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8월 22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내연관계 비관' 30대 女공무원 자살

1. 보도내용

「지난 20일 3시40분께 대구시 수성구 ○○○동의 한 아파트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모(○○·여)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씨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같은 구청 소속 김모(46)씨로 경찰조사 결과 ○씨와는 내연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외에 직업 및 근무처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직장동료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4

의결번호	제2014-258호
언 론 사	문화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11월 3일자 사회12면
기사제목	'생활苦' 일가족 3명 안타까운 자살

1. 보도내용

「생활고를 비관한 엄마와 중학생 딸이 먼저 목숨을 끊은 뒤 이를 발견한 아빠마저 뒤이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중학생 딸은 죽기 전에 남긴 유서에서 '우리 가족은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죽는다'는 글을 남겨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중략)

C 양도 유서에서 '그동안 부모님 말 안들어서 미안하다'며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으며 행복하게 죽는다'는 내용과 함께 아버지에게 '우리 시신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가족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 보도하여 자살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6 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사 례 15

의결번호	제2014-26호
언 론 사	연합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1월 28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포털 지도도 범행에 사용' 금은방 턴 20대들

1. 보도내용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를 이용해 금은방을 턴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이들은 우연히 30초 만에 금은방을 턴 절도범의 범행 수법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을 봤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초범이었지만 이들의 준비는 철저했다. 먼저 대전과 강원도 일대에서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 번호판 2개를 훔쳤다. 또 무전기와 쇠망치 등 범행도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며 최대한 짧은 시간에 물건을 훔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다. 특히 이씨 등은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 ○○○○○에서 제공하는 '○○○'(실제 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들은 범행 대상에서 파출소와 경찰서가 얼마나 먼지, 도주 경로에 단속·방범 카메라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중략)
하지만 이들은 상가 폐쇄회로(CC)TV와 길가에 세워 둔 차량의 블랙박스를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포털지도(로드뷰)를 활용하여 범행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사용된 도구, 체포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처럼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유사범죄에서 모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6

의결번호	제2014-222호
언 론 사	인터넷 서울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가스비 절감' 계량기 조작한 배관공 구속

1. 보도내용

「(전략) A씨는 도시가스 사용료를 적게 낼 방법을 찾던 중 가스 ○○○ 내부 ○○○에 ○○을 여러 개 내면 가스사용량이 평소보다 80%가량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중략)

경찰의 한 관계자는 "○○○는 ○○○이 압력을 받으면 가스사용량 수치가 올라가는 원리"라며 "○○○에 ○○이 뚫려 있으면 압력량이 줄어 수치도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노린 범행"고 말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가스 계량기를 훼손하여 가스요금을 줄이는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5 부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 제5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 · 처리한 언론조정 · 중재사건의 전체 목록을 게재합니다. 전체 목록은 각 중재부별 접수 · 처리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게재되었습니다.
-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포함) 및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익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내 부제소 조항과 이행강제금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제소 조항 :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중재결정(이하 '결정'으로 표기함)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
  이행강제금 조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결정(쌍방 동의)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지연손해금)을 지급하6도록 강제함
- 조정 사건 전체 목록 중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는 세월호 사건 관련 대량신청건으로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